

## 2024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공고

2024년 장성군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22일

장 성 군 수

### 1 사업개요

- 가. 신청기간 : 2024. 3. 25. ~ 4. 12.(평일 09:00~18:00)
- 나. 보급물량 : 23대(신청인 당 1대 지원)
- 다. 총사업비 : 30,000천원
- 라. 지원금액 : 최고 130만원/대(충전기 종류에 따라 차등 지원)
- 마.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개인)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장성군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두고 거주한 자
  - (기업·법인) 신청일 기준으로 장성군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법인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전기자동차\* 구매자(또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중 장성군 소재 거주지 또는 사업장(직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

\* 자동차등록원부 상 사용본거지는 장성군으로 되어 있어야 함.

\*\* 설치부지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부지 소유자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사용 및 충전기 설치를 승낙받은 경우에 한함.

- 정부 및 장성군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설치예정 장소에 기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내역이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중 1명이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자

## 2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가. 지원금액

벽부형 또는 스탠드형	이동형
최대 130만원	최대 1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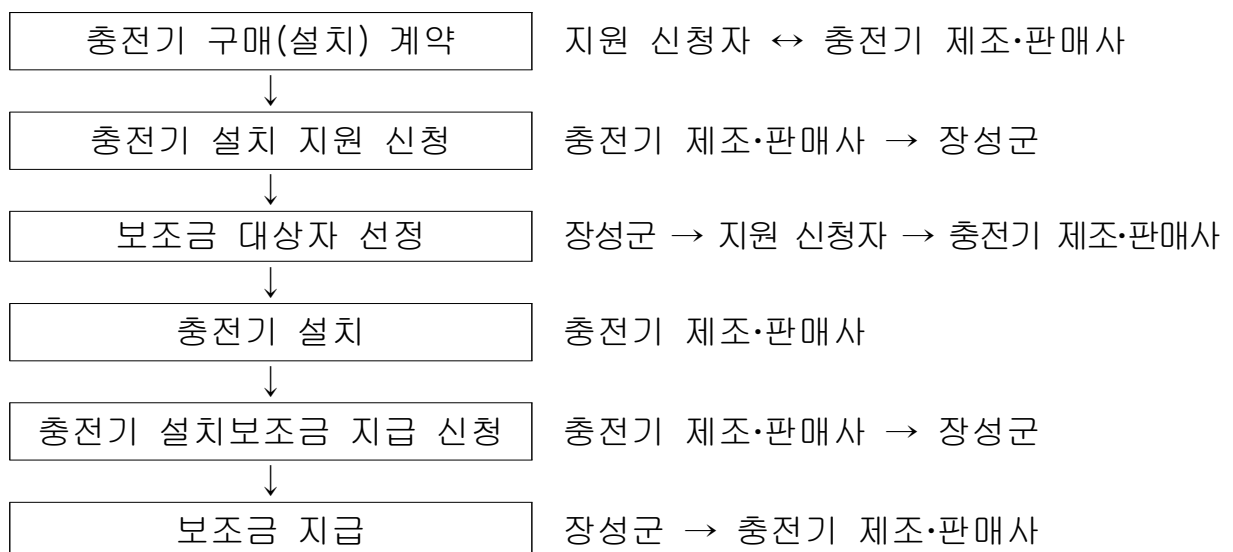
※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중 1명이 동일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보조금 지원 충전기

-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등록된 수행기관에서 생산된 충전기로 OCPP1.6 인증을 거친 제품\* 또는 도내 기업에서 생산된 충전기에 한함(붙임 참고)

\* OCPP1.6 인증을 받은 동종의 충전기가 없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 비공용 충전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3 보조사업 추진 절차



## 4

# 구매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가. 신청기간 : 2024. 3. 25. ~ 4. 12.(평일 09:00~18:00)

나. 신청서류

구분	지원 신청 제출 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분)	
해당	개 인	법인 등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제출서류에 법인 인감 날인 필수)
공통	①보조금 지원 신청서(서식1) ②보급사업 안내 확인서(서식2) ③현장 점검 확인서(서식3) - 설치업체 작성 ④충전기 설치계약서(충전기 제조·판매사 서식)-제품가격,설치비 등 구체적 계약금액 작성 ⑤전기자동차 등록증 사본 ⑥설치대상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⑦위임장(서식4) ⑧ 완속 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서식5) - 승낙서에 인감 날인 시) 설치장소 소유자 인감증명서 첨부 - 승낙서에 서명 시) 설치장소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사업 신청시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만 제출

- ①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②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③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다.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자 : 참여기업(충전기 제조·판매사)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담당자 메일 접수(js308220@korea.kr)
  - 방문접수 : 장성군청 1층 환경과 기후환경팀
  - 메일접수 : 1개의 파일로 서류전체를 일괄 스캔하여 PDF파일로 첨부
- ※ 지원 신청 서류 원본은 대상자로 확정 시 장성군청으로 제출
- 선정방법 : 일괄 접수후 대상자 선정

(1순위) ①장애인 ②기초생활수급자 ③차상위계층 ④상아·독립유공자 ⑤소상공인  
(2순위) 전기자동차가 장성군에 연속하여 등록된 기간이 오래된 자

- 신청자가 보급대수에 미달된 경우 전원 선정
- 신청자가 보급대수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와 대기자(예비순위 선정) 선정
- 1순위 신청자 중 보급대수 초과 신청할 경우 2순위 기준에 의하여 선정
- ※ 선정된 자가 선정취소 되거나 포기하는 경우 예비순위에 따라 추가 선정
- 결과통보 : 완속충전기 설치 참여업체 메일 및 개인별 우편 통지

## 5

### 보조금 지급 신청

가. 보조금 지급신청 : 참여기업(충전기 제조·판매사)

○ 신청기간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사 완료 시

구분	지급 신청 서류
제출서류 (청구시)	① 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6)    ② 보조금 위임장(서식7) ③ 보조금 정산서(서식8)        ④ 완속충전시설 설치완료확인서(서식9) 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확인증    ⑥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⑦ 전자세금계산서                    ⑧ 완속 충전기 취득세 납부확인서 ⑨ 참여기업(제조·판매사) 사업자등록증    ⑩ 하자보증보험증권 ⑪ 보조금 수령용 참여기업(제조·판매사) 통장 사본 ⑫ 청렴이행서약서(서식10)

- 보조금은 전기차 완속충전기 참여업체(충전기 제조·판매사)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2022. 1. 1.이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취득세(지방세)를 납부해야 함.

## 6

### 보조금 선정대상 및 설치사업자 준수사항

가. 사후관리 및 의무 사항

- 참여기업은 보조사업을 통해 설치한 충전기에 대하여 최소 2년간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책임이 있음.
- 비공용 충전기는 원칙적으로 충전기 소유자가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 책임
  - 다만, 충전기 설치 후 최소 2년간 제품하자보증 등 사후품질 책임은 충전기 제조사에게 있음.
- 충전시설 소유자가 5년 이내에 충전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균은 아래 표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 화재, 건물철거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함.

<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충전시설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2개월 미만	4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40%	30%	20%	10%

## 나. 비공용 충전기 설치장소 제한

- 충전기 설치장소는 장성군에만 설치 가능함.
- 설치장소는 이면도로 및 타인의 통행에 불편이 있는 곳 등이 아닌 적합한 주차공간 이어야 함.
- 개인구매자는 거주지 또는 근무 중인 회사, 법인구매자는 사업장 또는 차고지 등 사업관련 부지에 한하여 설치 가능함.

## 다. 완속충전기 설치 방법

- 참여기업은 「2024년 전라남도 전기충전기 보급사업 설치·운영 및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현장조사, 설치공사 등 절차에 따라 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함.

## 라.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 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참여기업은 보조금 대상 여부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충전기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충전기 수량제품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장성군에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충전기 국가지원 사업 및 한전 충전기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추후 중복신청 발견시 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전액 환수함.
-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함.
- 충전기 설치장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장성군은 개입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설치완료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 사업기한 연장요청이 가능함. 연장신청서 제출기한은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함.([별지1] 서식 활용)
- 신청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장성군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위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 「2024년 전라남도 전기충전기 보급사업 설치·운영 및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전라남도)」, 「2024년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지침(환경부)」에 따름.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장성군 환경과의 의견을 따름.

## 7 기타 전기차 충전기 관련 문의처

기 관	주 요 역 할	연락처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보급사업 관련 종합상담	(통합콜센터) 1661-0970
	충전소 위치 등 확인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환경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충전기 운영/ 회원카드 및 결제문의	(통합콜센터) 1661-9408
한국전력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관련 고객 상담	(통합콜센터) 1899-2100
	충전소 위치 등 확인 : 한국전력 전기차 충전서비스(evc.kepco.co.kr)	
장성군 (환경과)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관련	061)390-7361

- [붙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제조·판매사 현황
- [서식 1] 비공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 신청서
- [서식 2]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안내 확인서
- [서식 3] 현장 점검 확인서
- [서식 4]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위임장
- [서식 5]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 [서식 6]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서식 7] 보조금 위임장
- [서식 8] 보조금 정산서
- [서식 9]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완료 확인서
- [서식 10]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별지 1]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연장신청서
- [별지 2]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포기서

[붙임]

##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제조·판매사 현황

업 체 명	콜 센 터	업 체 명	콜 센 터
GS차지비	1600-4047	(주)이앤에이치에너지	043-260-1123
LG유플러스	1660-0365	(주)이지차저	1544-3332
SK에너지	1599-0051	(주)이카플러그	031-778-6181
SK일렉링크	1566-1704	(주)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1670-2690
대영채비(주)	1522-2573	(주)클린일렉스	02-1811-1350
보타리에너지(주)	064-747-8826	(주)타디스테크놀로지	02-6941-0609
신세계아이앤씨	1899-7495	(주)투이스이브이씨	1577-5918
아이마켓코리아	02-3708-5678	(주)파워큐브코리아	1833-8017
유니이브이	1577-8497	(주)펄프킨	031-591-6633
이브이시스(주)	031-960-6800	(주)휴맥스이브이	1800-3188
(주)매니지온	1833-2377	한국전기차인프라기술(주)	1877-6546
(주)스타코프	02-2118-1100	한화솔루션	1533-3464
(주)씨어스	1522-2640	현대엔지니어링	1833-8777
(주)에버온	1661-7766	홈앤서비스	1670-0119
(유)성민기업	1800-8468		

※ 완속충전기 제조·판매사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포털(<http://www.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추가 등 변동될 수 있음





#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안내 확인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기업)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확인) 글씨 기재)

확인사항	참여기업	신청자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은 장성군이 충전시설(이하 '설비')의 설치를 원하는 군민에게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기업과 신청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할 사항이므로 신청자 책임으로 참여기업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확인)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확인)	(확인)
2024년 완속충전기 국가지원 사업과 한국전력 사업을 중복신청 하지 않았으며, 추후 중복신청 발견 시 사업을 취소하며, 보조금 수령시 전액 반납합니다.	(확인)	(확인)
설치신청 장소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확인)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수리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확인)	(확인)
충전기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장성군은 개입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확인)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확인)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설치완료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 사업기한 연장요청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확인)	(확인)
신청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장성군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확인)	(확인)

<b>&lt;전기차 비공용 완속충전기&gt;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b>		확인 후 (확인) 안에 확인을 작성
1.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제품에 대한 KC인증 및 형식승인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2.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	
3.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2024년            월            일		
신청자 : (성명(기관명))		(서명 또는 인)
제조·판매사 대표 : (성명)		(직인)

## 현장 점검 확인서

<b>1. 신청자 정보</b>				<b>(앞면)</b>	
성명(기관명)		연락처	일반 061) 휴대폰		
주소					
<b>2. 희망 충전기 종류</b>					
[비공용] <input type="checkbox"/> 완속 충전기 <input type="checkbox"/> 과금형 충전기 <input type="checkbox"/> 콘센트 설치비					
<b>3. 차량 정보</b>					
제작사		차종		확인	<input type="checkbox"/> 차량등록증
<b>4. 주차공간 확보</b>					
주차면수		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확인		
<b>5. 설치장소 및 환경</b>					
장소	<input type="checkbox"/> 주거지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직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주소					
설치환경(확인 후 해당란에 체크)					
건물형태	설치위치	소유여부	소유주와의 관계	전력인입	설치타입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실내, 지하	<input type="checkbox"/> 소유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모자분할	<input type="checkbox"/> 벽부형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실외, 노상	<input type="checkbox"/> 임대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한전불입	<input type="checkbox"/> 스탠드폴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input type="checkbox"/> 지인		<input type="checkbox"/> 스탠드
<input type="checkbox"/> 상가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이동형 (                    )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무관		
기타사항				주차공간 확보 <input type="checkbox"/> (필수항목)	
<b>6. 전기 수용 용량</b>					
- 고압(모자분할)시 변압기 용량 확인				<input type="checkbox"/> 확인	
- 저압 경우 계약전력 확인				<input type="checkbox"/> 확인	
<b>7. 중복설치 여부</b>					
운 영 중	<input type="checkbox"/> 급속(    기) <input type="checkbox"/> 완속(    기) <input type="checkbox"/> 과금형콘센트(    기)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설 치 예 정	<input type="checkbox"/> 급속(    기) <input type="checkbox"/> 완속(    기) <input type="checkbox"/> 과금형콘센트(    기)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b>8. 조사자</b>					
상 호		연락처	일반 휴대폰		
성명		(인)	조사일	2024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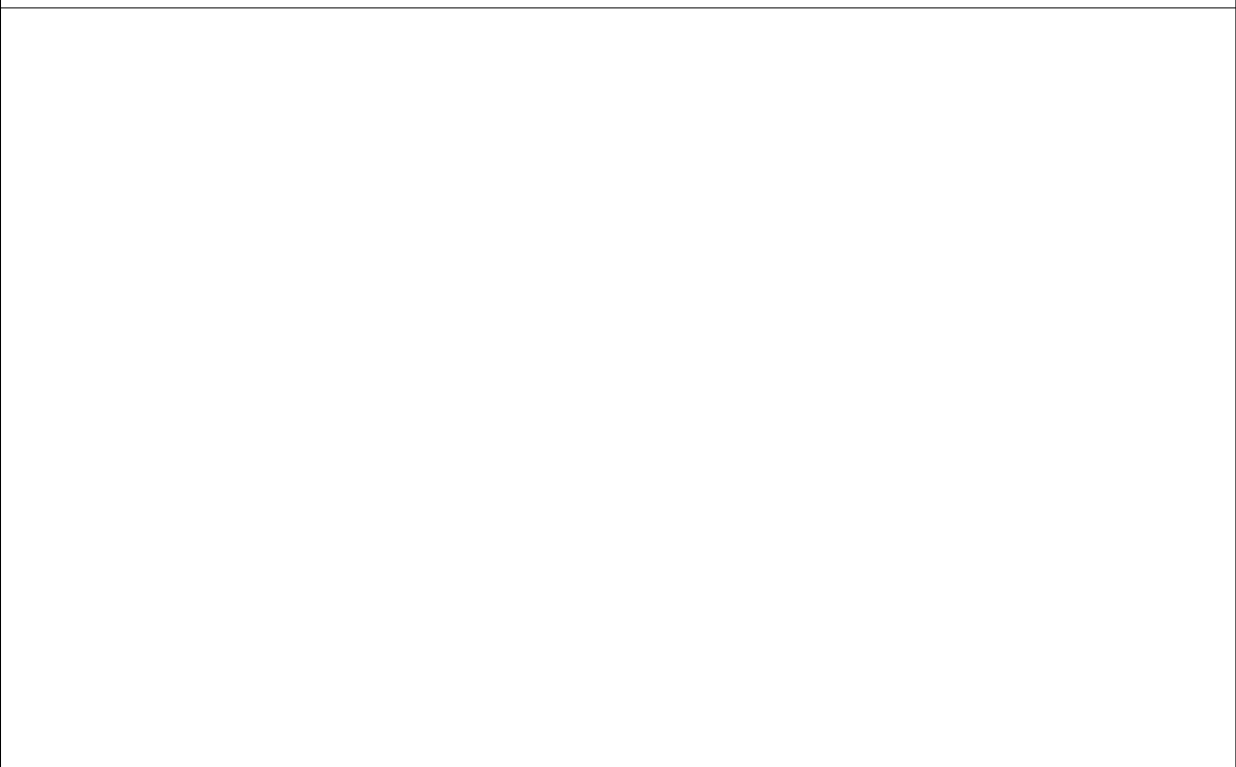
9. 현장 확인 사진

(뒷면)

▼ 전경(전체) 사진



▼ 설치장소 예정지 사진



[서식 4]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위 임 장**

위 임 자 (위임을 하는자 - 신청자)	성 명 (기관명)	(인)인감도장/서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수 임 자 (위임을 받는자 - 충전기 제조·판매사)	업체명/대표자	(인)
	법 인 번 호 (사업자번호)	
	주 소	

상기 위임자\_\_\_\_\_는(은) 수임자\_\_\_\_\_에게

2024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관련(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작성 및 보조금 수령 등)사항에 대해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위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4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서식 5]

##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 이용 승낙서**

(충전기 설치 신청자와 설치장소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작성)

설치주소(도로명)			충전기종류	
설치장소 소유자	성명 (기관명)		연락처	일반 휴대폰
	주소 (도로명)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신청자	성명 (기관명)		연락처	일반 061) 휴대폰
	주소 (도로명)			
충전기설치사용목적		전기자동차 이용을 위한 완속 충전기 설치 및 이용		
충전기 사용기간		2024년 월 일 ~ 년 월 일 (설치예정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사용하여야 함)		
<p>2024년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에 따라 위 설치 장소에 대한 완속 충전기 설치 및 충전기 이용을 승인하오니, 비공용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승인(설치승낙)자: (서명 또는 인)</p> <p><b>장성군수</b> 귀하</p>				
※ 구비서류 - 인감날인 시 : 인감증명서 - 서명 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b>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급 신청서</b>																
사업명		2024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신청인 (위임하는자)	성명 (기관명)		연락처	일반 061) 휴대폰												
	주소	(우편번호 )														
설치장소	소유자		연락처	일반 휴대폰												
	소재지															
충전기 제조·판매사 (위임받는자)	주소															
	성명 (대표자)		연락처	일반 휴대폰												
	보조금 입금처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지급요청금액		금 원														
<p>위와 같이 2024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였기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귀 기관에서 설치 업체(대표) 계좌로 보조금을 직접 입금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24.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감도장</p>																
<p><b>장성군수</b> 귀하</p> <p>※ 구비서류</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① 보조금 위임장(서식 7)</td> <td style="width: 50%;">⑦ 전자세금계산서</td> </tr> <tr> <td>② 보조금 정산서(서식 8)</td> <td>⑧ 완속충전기 취득세 납부확인서</td> </tr> <tr> <td>③ 설치완료확인서(서식 9)</td> <td>⑨ 충전기 제조·판매사 사업자등록증</td> </tr> <tr> <td>④ 청렴이행서약서(서식10)</td> <td>⑩ 하자보증보험증권</td> </tr> <tr> <td>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확인증</td> <td>⑪ 보조금 수령용 제조사 통장 사본</td> </tr> <tr> <td>⑥ 안전확인 신고증명서</td> <td></td> </tr> </table>					① 보조금 위임장(서식 7)	⑦ 전자세금계산서	② 보조금 정산서(서식 8)	⑧ 완속충전기 취득세 납부확인서	③ 설치완료확인서(서식 9)	⑨ 충전기 제조·판매사 사업자등록증	④ 청렴이행서약서(서식10)	⑩ 하자보증보험증권	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확인증	⑪ 보조금 수령용 제조사 통장 사본	⑥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① 보조금 위임장(서식 7)	⑦ 전자세금계산서															
② 보조금 정산서(서식 8)	⑧ 완속충전기 취득세 납부확인서															
③ 설치완료확인서(서식 9)	⑨ 충전기 제조·판매사 사업자등록증															
④ 청렴이행서약서(서식10)	⑩ 하자보증보험증권															
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확인증	⑪ 보조금 수령용 제조사 통장 사본															
⑥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서식 7]

## 보 조 금 위 임 장

사업비 내역

사업명	사업량 (대)	사 업 비(원)			보조금 청구액 (원)
		계	보 조	자 담	
2024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본 사업의 보조금 수령을 다음 피위임자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자(신청인/ ※ 위임자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주 소:
- 성 명(기관명):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피위임자(참여기업)

- 업 체 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예금주:
- 예금주 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024년      월      일

장 성 군 수 귀하



## 보 조 금 정 산 서

사업 내역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사업량 (대)	사 업 비(원)			사업량 (대)	사 업 비(원)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위와 같이 2024년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여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보조금 정산 구비서류

- 보조사업 대상자(신청인)
  - 자부담 납부 증빙 자(통장 사본 등)
- 참여기업(충전기 제조판매사)
  - 입금계좌 발급증, 입금포(자부담), 전자세금계산서 등

2024년    월    일

정산자(신청인)    주 소:

성 명(기관명):                    (인)인감도장

정산확인자            직 명:

성 명:                                    (인)

장 성 균 수    귀하

##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시설 설치완료 확인서

신청자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자택(회사) : 휴대폰 :
설치장소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도로명 주소:		
설치내역	비공용 충전기		
	벽부형 또는 스탠드형	이동형 충전기	
	기	기	
충전기 종류	제작사 : 판매사 : 모델명 : 설치용량 :                      kW		
▼ 전경(전체) 사진		▼ 충전기 설치 사진	
2024년도 비공용 완속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충전기 제조·판매사:	(직인)
<b>장 성 군 수</b> 귀하			

##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장성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장성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장성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0조)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40조)

-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1.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 제39조(벌칙) ①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또는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1.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또는 제29조(검사)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성 명(기관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별지 1]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연장신청서**

성 명 (기관명)		전기자동차 차량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일반 061) 휴대폰
설치장소			
충전기 종 류	<input type="checkbox"/> 완속충전기(벽부형 또는 스탠드형) <input type="checkbox"/> 이동형 충전기		
사업 연장 요청 사유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정 <input type="checkbox"/> *기 타 ※ 기타(내역) : (                                      )		
기존 설치완료 예정일	2024. . . .	연장 요청기한	2024. . . . ※ 설치 예정일로부터 최대 30일
<p>2024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 사유로 인하여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기한을 연장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자 성명(기관명):                                      (인) 인감도장</p> <p>장 성 균 수 귀하</p>			

## 2024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포기서

### 1. 포기자

- 성명(기관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연락처 :

### 2. 사업 포기 내역

사업명	보조금액	신청 충전기 종류
2024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원	<input type="checkbox"/> 완속충전기 (벽부형 또는 스탠드형) <input type="checkbox"/> 이동형 충전기
포기 사유		

### 3. 참고사항

- 중도 포기자는 2년 이내 동일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2024년 장성군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상기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포기자 성명(법인명):

(인)인감도장

장성군수 귀하